

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'동포 통합 정책'을 추진합니다



1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으로 통합합니다

1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 적용



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·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달리 부여함



살인, 강간, 마약, 보이스피싱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재외동포(F-4) 자격을 받지 못함

2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

현 방문취업(H-2) 자격자는 '통합신청서'로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

※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
www.hikorea.go.kr

- 제출서류 : 재외동포(F-4) 통합신청서(신고서)
- 수수료 : '27. 12. 31.까지 면제 (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)
- ※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



안내사항

- 방문취업(H-2)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됩니다.
- 기존 방문취업(H-2)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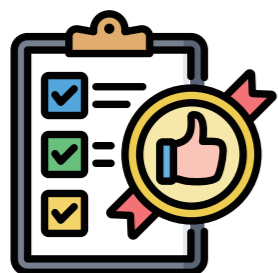
2 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의 취업범위를 확대합니다

기존 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의 취업이 불가능했던 **10개 직업**의 취업을 허용합니다

10개 직업 취업 허용

건설 단순 종사원	광업 단순 종사원	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	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	수동 포장원
수동 상표 부착원	주유원	매장 정리원	주차안내원	자동판매기 관리원

3 한국어 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




한국어 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영주(F-5) 자격 신청 시 **완화된 소득기준***을 적용합니다

* 한국어 능력 우수자(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)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70% 이상
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 이상

안내문의

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
(국번없이 **1345**, 통역지원)


www.hikorea.go.kr

법무부 지정
 동포체류지원센터
(전국 23개)